

## 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울산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1. 29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변상(3명), 경고(6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우량고객 우대대출 취급 부적정

○ 차주가 우량고객 우대대출 취급 제한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대출을 취급하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음

주택건설자금대출 사후관리 소홀

○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하여 나대지와 건축 완료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, 완공 후 감정 결과에 따른 채권보전 미달금액에 추가 담보 취득 및 대출금 회수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함

< 관련법규 >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87조(채무자 자격제한), 제259조(후취담보 취득시 유의사항), 제5편 제457조(특약사항), 제463조(채권보전), 제587조(상품개요), 제588조(우량고객의 기준)

○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, 제32조(기타 조치)

○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